

지역분회 규정

<2017. 1. 1. 제정>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(이하 “학회” 라 한다)의 경기·강원·제주, 충청지역, 영남지역, 호남지역의 분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분회(이하 “분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분회 회원 관리
2. 지역분회 포럼 개최
3. 기타사항

제3조(구성) 본 분회는 위원장 1명, 간사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장) 분회장은 본 분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분회의 의장이 되며, 학회 부회장 또는 이사로 보한다.

제5조(간사) 간사는 분회장을 보좌하며, 학회 이사로 보한다. 간사는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으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) 위원은 분회 업무의 전문적이며 원활한 수행을 담당하며, 분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7조(회의) 본 분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장이 소집하며,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,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분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부 척

1.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)